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4. 7.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3월 25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4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년 4월 2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가. 개 정 이 유

-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거주기간 부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부 출산가정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12개월 미만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함(제4조 제2항)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기한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이나, 12개월 미만 거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구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제5조 제2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12개월 미만 우리 구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거주기간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2008년 출산장려금 집행실적은 셋째 아이는 165명, 82,500천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명 10,500천원으로 총 180명 93,000천원임.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4 호
----------	---------

제출연월일 : 2009.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거주기간 부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부 출산가정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12개월 미만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함(제4조 제2항)
- 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기한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이나, 12개월 미만 거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구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제5조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편성 기완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2.5~2.24)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략)</p> <p>②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서 신설)</p>	<p>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 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